



의안번호	제3호
------	-----

<p>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이계천 의원 외 3명
제출연월일	2022. 2. 7.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호
----------	-----

발의연월일 : 2022. 2. 7.

대표발의자 : 이계천

공동발의자 : 차경선, 박승용,
박영자

1. 제안이유

논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자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4호)
- 나.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3조제6항)
- 다. 논산시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을 명시함.(안 제4조 ~ 안 제6조)
- 라.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을 규정함.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관광진흥법」 제2조, 제76조
- 나. 입법예고 : 2022. 02. 07. ~ 02. 11.(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자원”이라 함은 관광을 유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은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2.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5조의2를 제16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제6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광발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광자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광사업 관련 대표자

2.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관광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인 위원과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이계천 의원 외 3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관광자원”이라 함은 관광을 유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사업) ① ~ ⑤ (생략)</p> <p><u><신설></u></p>	<p>제3조(지원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시장은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p> <p>1. <u>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u></p> <p>2. <u>관광시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u></p> <p>3. <u>그 밖에 관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u></p>
<p><u><신설></u></p>	<p>제4조(위원회 설치) <u>시장은 제3조 제6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광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u></p>

<신 설>

<신 설>

다)를 들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광자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광사업 관련 대표자

<신 설>

<신 설>

<신 설>

2.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
원

3. 관광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인 위원과 시 소속 공
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경
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된다.

<신 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 설>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1조 (생략)

제14조 ~ 제22조 (현행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1조와 같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 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

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

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